

청강창조센터(CCRC) 운영규정

제정 2012.07.01
개정 2020.06.08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산학협력단)의 학교기업 청강창조센터(이하 “CCRC”라 한다.)의 효과적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CCRC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애니메이션, 게임, 만화, 영상제작 사업
2. 콘텐츠 제작 관련 외부 용역 수탁 및 창작콘텐츠 제작 사업
3. 콘텐츠 제작 또는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
4. 콘텐츠 제작과 연계한 현장실습 운영
5. 국내외 타 학교기업과의 협력 및 교류
6. 기타 CCRC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부대사업 추진

제2장 조직 및 임무

제3조(조직) CCRC는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제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타 직제와 겸직 가능하다.

- ① 대표이사
- ② 센터장
- ③ 팀장 및 사업담당
- ④ 연구원
- ⑤ 운영위원회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의 임명에 관련한 사항은 「산학협력단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-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.
 1. 사업계획 수립
 2.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
 3. 사업 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
 4. 기타 CCRC 운영에 관한 사항

5. 대표이사를 대리한 센터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

제5조(팀장 및 사업담당) ① CCRC는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1인의 팀장과 1인 이상의 사업담당을 둘 수 있다.

② 팀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CCRC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관장한다.

③ 사업담당은 팀장을 보좌하여 CCRC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다.

제6조(연구원) ① CCRC는 효과적인 제작사업 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학교기업 CCRC사업장의 근무인력으로 분류되며 채우는 「산학협력단 취업규칙」에 따른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CCRC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「산학협력단 운영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위원회는 센터장의 요청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.

1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CCRC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기타 CCRC 운영에 관련한 중요사항

제3장 사업운영

제8조(사업수주 및 보고) ① 센터장은 사업수주 시 수탁기관, 사업기간, 사업내용, 사업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CCRC의 운영을 위임받은 스쿨 원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사업발주 및 보고) ① 센터장은 사업발주 시 발주목적, 사업기간, 사업내용, 사업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CCRC의 운영을 위임받은 스쿨 원장에게 보고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운영세칙) CCRC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 지침」과 「산학협력단 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③ 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④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.